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확대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작성자	이름	유도경
	담당부서 (과)	친밀관계폭력방지 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조용수		연락처	02-2100-6423
	과장	정회진		이메일	afcmd@korea.kr

2025. 11. 11.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확대											
	2.규제조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위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 12. 4. ~ 2026. 1. 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9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 기준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의 긴급전화센터 등 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험 및 전문성 활용 기회 제고											
	7.규제내용	○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으로 9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 기준(6년 이상)을 포함하도록 정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9급 이상 공무원 ※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기존 자격 기준에 포함되므로 피규제집단에서 제외 ※ 출처 :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계급별 공무원 정원, 2024.12.31.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8급, 9급 공무원</td> <td>약 22만 여 명</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td> <td>약 1400명</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8급, 9급 공무원	약 22만 여 명	이해관계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약 1400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8급, 9급 공무원	약 22만 여 명											
이해관계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약 1400명											
9.규제목표	○ 9급 이상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장으로의 참여 기회 확대로 종사자 인력풀 확대 및 전문성 활용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기존 법령에서는 7급 미만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보유하여도 긴급전화센터 · 상담소 · 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6년 이상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할 경우 시설장 자격기준 경력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자아실현 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보유한 인력 활용 가능성이 제고되므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p> <p align="center">자격기준 (제9조 관련)</p> <p>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align="center">구분</th> <th align="center">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상담소·보호시설의 장</td> <td>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td> </tr> <tr> <td align="center">긴급전화센터의 장</td> <td>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td> </tr> <tr> <td align="center">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td> <td>1~5. 생략</td> </tr> <tr> <td align="center">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td> <td>1~3. 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5. 생략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3. 생략	<p>[별표 3]</p> <p>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p> <p align="center">자격기준 (제9조 관련)</p> <p>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u>이수</u>해야 한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align="center">구분</th> <th align="center">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align="center">상담소·보호시설의 장</td> <td>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u>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td> </tr> <tr> <td align="center">긴급전화센터의 장</td> <td>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u>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td> </tr> <tr> <td align="center">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td> <td>1~5. 생략</td> </tr> <tr> <td align="center">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td> <td>1~3. 생략</td> </tr> </tbody> </table>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u>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u>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5. 생략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3. 생략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5. 생략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3. 생략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u>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긴급전화센터의 장	1. 생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u>3년 이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u>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략 4. 생략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5. 생략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3. 생략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법령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 8급 및 9급 공무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활용하여 긴급전화센터장 등으로 진입이 불가하였음
 - 이에, 8급 및 9급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자격 기준에 포함하여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향후 긴급전화센터 등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정비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 직급간 합리적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 경력 기간(6년 이상)을 설정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중앙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 (공문 / '25.9.8~'25.9.18.)	의견 없음	-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등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5.12.4.~'26.1.14. 예정)	-	-

3. 규제목표

- 8급 및 9급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긴급전화센터장 등 자격 기준에 포함하여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시설장으로의 진입을 확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긴급전화센터장 등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관련 자격 기준을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기준 내 9급 이상 공무원의 가정폭력등 방지업무 종사 경력을 포함함
 - 아울러 7급 이상 공무원의 관련 분야 필요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직급간 합리적 차이를 고려하여 9급 이상 공무원의 최소 필요 경력 기간(6년 이상)*을 설정함

* 공무원 최소 승진 소요연수 : 9급 → 8급(1.5년 이상), 8급 → 7급(2년 이상)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관련 경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현행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 등의 장의 공무원 관련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 경력을 요구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상이
- 개정안은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 등 시설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관련 자격요건을 개별기준 내 다른 호의 민간 경력자 수준 등으로 완화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였음
- 아울러 자격기준을 공무원 내 특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직급간 합리적 차이를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시설종류	시설 장 자격기준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기준 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기준 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기준 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기준 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다함께돌봄센터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기준 無 *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기준 충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기준 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 <u>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u>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시설	• <u>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u>	「아동복지법 시행령」

	<u>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자립지원전담기관	• <u>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보호전문기관	•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아동복지법 시행령」
가정위탁지원센터	• <u>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숙인시설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u>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시설	• <u>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u> 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 해지원센터	• <u>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성매매피해 상담소등 (지원시설,자활지원 센터,상담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u>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긴급전화센터 등의 설치신고 및 시설장 변경신고 및 수리 절차가 마련되어 운용중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무원 경력확인 은 공적자료로서 비교적 확인이 명확·용이하므로 지자체에서 시설장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시 새롭게 정비된 내용으로 심사하는 등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긴급전화센터 등 시설장 자격기준 요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재정적 집행 부담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시행규칙 개정 목적은 긴급전화센터 등 장의 자격기준 중 현행 특정 직급(7급 이상)에 한정된 공무원 관련 경력 기준을 9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 일부 공무원들에 한하여 적용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정폭력등 방지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널리 활용하려는 것임
- 한편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별 설치신고 및 시설장 변경신고·수리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기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시설장 자격기준에 대한 정비 차원으로서 집행가능성 높으며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 따라서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관련 자격기준을 9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직급간 합리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 승진 소요연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력 기간을 정하는 것은 제도운영에 바람직하므로 동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2.규제조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위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12.4.~2026.1.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지원 중이나, 보호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피해자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시설 환경 개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시설 협소 문제 및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개입 필수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기준 강화는 지자체 및 민간시설이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장치로서, 피해자의 보호권 증진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하고 중요한 조치임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회복 환경 제공을 위해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6.6㎡에서 9.9㎡로 상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 집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관 ○ (이해관계자)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자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관</td> <td>64개소(2025.11월 말 기준)</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가정폭력 피해자 입소자 등</td> <td>연간 1,500명 내외</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관	64개소(2025.11월 말 기준)	이해관계자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자 등	연간 1,500명 내외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관	64개소(2025.11월 말 기준)											
이해관계자	가정폭력 피해자 입소자 등	연간 1,500명 내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인권 보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보호시설 1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을 통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으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도모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사회적 인적 자원 확충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고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보호시설 연면적 기준은 시설 설계 및 설치 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하므로, 사후규제 적용 부적합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17.></p>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p> <p>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p> <p>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3~5. 생략</p>	<p>■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17.></p>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p> <p>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p> <p>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u>9.9제곱미터</u>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호 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u>않는</u>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u>않는다</u>.</p> <p>3~5. 생략</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회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 (추진배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지원 중이나, 보호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피해자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보호시설 환경 개선 필요
- (주요경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연면적 기준 상향 등 환경개선 필요 지적(24년 국정감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활 환경 개선 방안 연구(25.6월)

□ 정부개입 필요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보호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정부개입은 피해자의 보호권 증진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피해자의 인권 및 건강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충분한 개인 공간은 안전감 제공과 심리적 회복에 필수적, 1인당 연면적 확대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의미임
- (보호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과밀시설은 사생활 침해, 갈등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함, 최소 면적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시설 내 환경개선, 상담 및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국가책임과 지원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법적 기준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시설이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장치임. 기준 상향은 예산확보 및 시설 리모델링 등 추가 행정 지원 필요성과 연계됨.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시설의 단계적 개선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필수적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보호시설의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을 현행과 동일하게 6.6㎡ 이상으로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신설기준 적용
	내용	기존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연면적 상향 기준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별도 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
	내용	기존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충분한 보호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면적 등 현황파악 및 인센티브(보조금) 제공을 통해 공간 확충 유도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기존시설 운영에 부담 없음, 즉시 적용 가능	○ 피해자 인권 및 쾌적성 보장 한계 ○ 시설 과밀 문제 지속
규제대안1	○ 기존 시설 부담 완화 및 신규 시설 환경 질 향상 ○ 단계적 적용으로 점진적 개선 가능 ○ 비용 부담 분산 효과	○ 신설 및 이전시에만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 환경 개선 속도 제한
규제대안2	○ 민간의 보호시설 연면적 확대 비용 부담 경감	○ 시설 공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책 마련에 과중한 정부 예산 및 행정자원 소요되며 예산 확보 불투명 ○ 기존 시설 개선 의지 부족 시 효과 미흡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중앙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 (공문 / '25.9.8~'25.9.18.)	의견 없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5.12.4.~'26.1.14. 예정)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25. 1월~6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개선방안인 규제 대안 1을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지조건 및 시설 규모

-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지조건으로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시설의 규모는 '입소정원×6.6m² 이상'

【 입지 조건 및 시설 규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구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입지 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시설 규모	· 입소정원 × 6.6m ² 이상 ※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 가능		

출처: 1) 여성가족부(2025).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18, p.442, p.473

□ 유사 시설의 입지조건 및 시설 규모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입지 조건은 거의 동일하나, 규모는 큼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규모는 세부유형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 보호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정원 1인당 최소면적은 9.9m²~15m²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10명 미만의 경우 정원 구간별 최대 인원 수용 시 정원당 8.66m²~9.9m²이며, 10명 이상의 경우 정원당 9.9m²

【 입지 조건 및 시설 규모 -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시설 】

구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지 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교통편의 등 충분히 고려	
시설	구분	일반 보호	장애인보	특별 지원	자립	장애인	구분	최소면적

규모		시설	호 시설	보호 시설	지원 공동생활 시설	자립 지원 공동생활 시설		
	7인 이하	-	-	-	70㎡ 이상	103㎡ 이상	5명 미만	34.65㎡
	8인 이상 10인 이하	99㎡ 이상	132㎡ 이상	132㎡ 이상	99㎡ 이상	132㎡ 이상	5명 이상 8명 미만	69.30㎡
	11인 이상 15인 이하	165㎡ 이상	198㎡ 이상	198㎡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8명 이상 10명 미만	82.62㎡
	16인 이상 20인 이하	198㎡ 이상	264㎡ 이상	264㎡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10명 이상	9.9㎡×입소정원

주: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를 제외한 생활시설만 비교 검토

출처: 1) 여성가족부(2025).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48, p.603

○ 한부모시설 및 학대피해 관련 시설의 입지조건과 시설규모는 각 시설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지 조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하고, 면적기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세대당 면적, 인당 면적 기준이 구분
 - ※ 양육지원시설은 세대당 20.79㎡, 생활지원시설은 세대당 56.1㎡(2007.3.29. 전 설치 시설은 44㎡)이고, 일시지원시설은 정원당 9.9㎡임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지 조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하나,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
-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설치해야 하는 건물 유형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몇 개의 공동생활가정이 한 주거 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시설 규모에서도 주택형 숙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100㎡ 이상이어야 함.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100㎡ 미만인 아파트를 인정하거나, 연접한 2주택의 전용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여 연접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아동 정원 8명 미만 규정)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특별한 입지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 규모는 정원당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입지 조건 및 시설 규모 - 한부모시설 및 학대피해 관련 시설 】

【 입지 조건 및 시설 규모 - 한부모시설 및 학대피해 관련 시설 】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지 조건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 설치장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몇 개의 공동생활가정을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
시설 규모	· 양육지원시설(5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 20.79㎡×정원(세대) · 생활지원시설(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 (2007.3.29. 전 설치) 44㎡×정원(세대) : (2007.3.29. 이후 설치) 56.1㎡×정원(세대) · 일시지원시설(10명 이상 70명 이하) : 9.9㎡×정원(명)	·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 - 시·군·구 내에 전용면적 100㎡ 이상의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100㎡ 미만인 아파트 인정 -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 주택 한 채의 전용면적이 100㎡ 미만이나, 연접한 2주택의 전용면적 합이 10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연접한 2주택을 하나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설치가능(사전 협의 필요)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 확보

주: * 이용시설, 출산지원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만 비교 검토

출처: 1) 여성가족부(2025).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244

2)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p.220, pp.240-242

3) 보건복지부(2024). 202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제1권). p.201

3. 규제목표

-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을 보장하며 과밀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며, 시설 내 서비스 질을 높여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자립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적정성) 규제의 목적인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무에 부합함
 - 보호 공간 과밀화로 인한 피해자 스트레스, 사생활 침해, 건강 위험 등을 해소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은 사회적·인권적 가치 실현에 명확히 부합하며 정당함
- (수단의 적정성)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은 시설 내 공간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으로서, 피해자 보호 목표 달성에 효과적
 - 아울러,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시설에 한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현실적 조정 방안도 마련된바 수단으로서 적정성이 높음
- (비례성 원칙) 피해자의 기본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연면적 기준 상향은 정당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 인정
 - 시행범위를 신설·이전 시설로 제한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과 정책 실행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점은 규제의 비례성을 보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규제는 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보호시설 운영 주체에게 적용되며, 기업체와 같은 일반 영리기업의 고용활동이나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은 공공의 기본 책무로서 최소 기준 준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시장유인적 대체는 기준 미달 시설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몰설정 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국민의 직접적인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규제에는 일몰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규제 유지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최소 연면적 등 핵심 시설 기준은 피해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사전 규제
설정하는 것이 필요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캐나다 BC Housing, 호주 NSW DPE(2022), 미국 워싱턴 WSCADV Building Dignity Site Design은 생활실(sleeping accommodation)에 설치 고려 사항 제시
- 생활실 최소 바닥면적은 침실(room)과 유닛(units) 단위로 구분, 캐나다 BC Housing은 욕실을 포함하지 않은 방(room)에 대한 기준 면적 제시, NSW DPE 가이드는 개별 유닛 단위 최소 바닥 면적 제시
- (BC Housing) 침실 최소 바닥면적은 1인실 10.2m², 2인실 13.9 m², 3인실 17.7m²이며, 욕실을 뺀 면적
- (NSW DPE) 유닛 최소 바닥면적은 스튜디오형 유닛 35m², 1개 침실 유닛 50m², 2개 침실 유닛 70m², 3개 침실 유닛 90m², 트윈 유닛 120-160m²임. NSW DPE는 개별 유닛의 발코니 면적, 수납 공간 면적 기준도 함께 제시

【 생활실 설치 기준 비교 】

침실 설치 기준	한국(2025) 보호시설 설치 지침	캐나다 BC Housing (안전주택전환주택 기준)	호주 NSW DPE Core & Cluster 모델 Cluster Building 기준	미국 워싱턴 WSCADV Building Dignity Site Design
설치 원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실 원칙 (1인실/1가구실) - 가급적 전용 욕실 포함 - 1실 최대 2인 - 공동생활 시 개별 옷장수납공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실 원칙 (1인실/1가구실) - 공동사용 가능 - 유닛 단위 설계 : 개별 유닛은 침실, 욕실, 거실, 주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실 원칙 (1인실/1가구실) - 공동사용 가능
설치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조용한 곳,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위한 창문 설치 - 여러 개의 침실 공간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문을 열어 더 큰 유닛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호 연결 유닛으로 설계 - 반려동물 친화적 침실은 케이지 공간 확보 등 - 냉난방을 위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 개별 화장실 설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 건물은 전면도로 또는 건물로부터 일정 거리 확보(사생활 보호, 안전확보, 소음 통제) - 놀이터 등 공유공간을 유닛 사이나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성과 가시성 확보 - 개별 출입구, 공용공간과의 접근성 확보 - 외부/거리에서 보이지 않도록 창문 프라이버시 스크리닝 카펫 마감 - 와이파이어, 에어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공간 입구 더치 도어 및 블라인드 설치 - 개별 유닛 주방 마련(언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함) - 개별적으로 제어가능한 조명 및 온도제어기 - 유연한 가구 배치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실이나 유닛 지정 - 개인 욕실이 없을 경우 리모델링 시 추가 욕실 우선 설치

최소 바닥 면적	없음	- 침실 최소 면적 1인실 10.2㎡ 2인실 13.9㎡ 3인실 17.7㎡ *욕실면적 불포함	- 유닛 최소 면적 스튜디오형 유닛 35㎡ 1개 침실 유닛 50㎡ 2개 침실 유닛 70㎡ 3개 침실 유닛 90㎡ 트윈 유닛 120-160㎡	-
		*2단계 주택은 모두 독립 유닛 설계(욕실, 주방, 개인 거실 및 식사 공간 포함)	*발코니, 수납공간 기준면적 제시함	

출처:

1. BC Housing. (2021). Design guidelines for women's safe homes, transition houses, second stage housing, and long-term rental housing, pp.19-26.
2. NSW Department of Planning and Environment(2022). Domestic Violence Crisis Accommodation Functional Design Brief. pp.37-38.
3. 가정폭력쉼터 Building Dignity 디자인 전략 홈페이지, <https://buildingdignity.wscadv.org/>

○ 타법사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한 시설은 대상자 보호를 위한 숙식 제공(주거지원), 상담 및 치료 등 기능 유사성 중심으로 볼 때, 여성폭력 관련 시설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대피해 관련 시설인 학대피해 아동쉼터, 학대피해 전용쉼터가 있음

구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근거법령	·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성폭력방지법 제12조)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성매매방지법 제10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
목적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여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씀

		이나 단체, 개인	리민간단체, 개인		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시설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 의료지원 ·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등 동행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된 업무 · 그 밖에 필요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지원시설: 숙식제공, 전문상담/의료·법률지원/사회보장 급부수령 지원/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 청소년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과 동일/진학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기관 취학 연계 등 ·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피해자 긴급보호/통역서비스 제공/전문상담, 의료법률 지원/대사관 등 관계기관 연계/숙식 제공, 귀국지원 등 ·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일정기간 주거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지원시설: 주거 등 생활 지원, 자립 프로그램 실시, 자립 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등 · 생활지원시설: 주거 등 생활지원, 자립프로그램 실시,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등 · 일시지원시설: 주거 및 식사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의료혜택,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 후 자립 위한 시설 외 근로 지원,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자녀의 방과 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자립지원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 학력아동 수업참가 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와 숙식제공 등 쉼터 생활 지원 ·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의료비 지원 ·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 *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를 제외한 생활시설만 비교 검토

** * 이용시설, 출산지원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만 검토

출처: 1) 여성가족부(2025).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p.146-148, pp.602-603

2) 여성가족부(2025).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235, pp.238-243

3) 보건복지부(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pp.238-239

4) 보건복지부(2024). 202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제1권). pp.199-201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신설기준 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806.46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신설기준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806.46		806.4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806.46	-806.46
정부			
총 합계	806.46	806.46	
기업순비용	806.46	연간균등순비용	101.91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므로, 인가조건인 연면적 기준 충족을 위해 피규제의 규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대상이며, 정기 점검·평가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신설·확장 시설에 한정하는 단계적 시행으로 집행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행 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LH, SH 등 공공임대 주택 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이 가능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4.11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활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24.12월~'25.2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별 현황조사
- '25.3월~4월 : 담당 공무원(국가, 시, 군, 구) 현장 실사
- '25.4월~5월 : 건축 및 주거, 현장 전문가 회의(4차)
- '25.5월~6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종사자 등 관계자 간담회(3차)
- '25.6월~8월 : 타법사례 및 해외사례등 검토(정책연구 완료)
- '25.9월 :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8.26.), 부처 의견수렴(9.8~9.19)

2. 향후 평가계획

- '26년 : 매년, 현장점검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연면적 기준 준수 여부, 시설 환경, 피해자 안전 상태를 점검
- '28년 : 3년 주기, 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 전반을 평가하며, 연면적 기준 뿐 아니라 서비스 질, 피해자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보관 또는 비치해야 하는 각종 장부·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25년 3월

4. 종합결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서, 적정 면적의 공간 제공은 피해자 회복과 자립 지원에 필수적 조건임

- 현재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은 공간 규모가 협소해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보호시설 설치 기준 면적은 6.6㎡로 국토교통부의 1인 최저 주거기준(14㎡)에 미치지 못하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기준보다 협소한 실정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별표2]를 통해 보호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법 제정 당시 보호 시설 설치 기준 면적은 정원 1인당 3.3㎡였으며,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원 1인당 6.6㎡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됨
- 2006년 이후 정비되지 않은 보호시설 설치 기준은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뒷받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호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인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규칙 개정은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
- 특히, 신규 설치 및 확장되는 시설에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부담 완화와 준수율 제고를 동시에 도모함.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및 점검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신설기준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06.46		806.4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806.46	-806.46
정부				
총 합계		806.46	806.46	
기업순비용		806.46	연간균등순비용	101.91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가정폭력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보호시설 1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을 통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으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도모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사회적 인적 자원 확충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고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신설기준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기관
활동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전 시 1인당 연면적 준수를 위한 임대보증금 증가비용 부담
비용항목	운영
비용	806,464,23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개소 × 1평당 평균 임대보증금 × 14평 (1*7,280,000*14)
근거설명	<p>□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이전 시 강화된 1인당 연면적 기준 준수를 위한 임대보증금 증가비용</p> <p>○ 임대보증금 증가비용 = 대상 시설 수(신규설치 시설 수 + 이전 설치 시설 수) × 1평당 평균 임대보증금 × 평수 증가분</p> <p><대상 시설 수></p> <p>1. 신규 설치 시설 수</p> <p>–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감소추세로 신규시설(0개소)이 없다고 가정</p> <p>2. 이전 설치 시설 수</p> <p>– 통상 연간 1개소 이전 가정</p> <p>< 1평당 평균 임대보증금 ></p> <p>– 사회복지시설에서 LH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설 운영이 가능하므로, LH임대주택 기준 1평당 평균 임대보증금 728만원으로 산정</p> <p>※ 1평당 임대보증금은 유사사업인 성평등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LH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폭력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 현황 조사결과('25.12월)를 참고</p> <p>< 평수 증가분 ></p> <p>–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3개소의 정원 평균인 14명을 적용하여 현행 1인당 연면적 기준인 6.6제곱미터(2평)에서 이전 시 9.9제곱미터(3평) 준수를 위해 14평 증가로 산정</p>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활동제목	확대된 1인당 연면적 보호시설에서의 보호·지원
편익항목	상향된 1인당 연면적 보호시설에서의 입소자의 증가 편익
편익	806,464,23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입소공간 1평당 평균 편익 × 14명 (7,280,000*14)
근거설명	<p>□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이전 시, 강화된 1인당 연면적 기준 시설에서의 입소자의 증가 편익</p> <p>○ 입소자 증가편익 = 대상 시설 수(신규설치 시설 수+이전 설치 시설 수) × 시설 당 평균 정원 × 1평당 평균 편익</p> <p><대상 시설 수></p> <p>1. 신규 설치 시설 수</p> <p>–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감소추세로 신규시설(0개소)이 없다고 가정</p> <p>2. 이전 설치 시설 수</p> <p>– 통상 연간 1개소 이전 가정</p> <p><입소공간 1평당 평균 편익></p> <p>– 입소자의 입소시설의 1인당 연면적 3.3제곱미터 증가에 따른 편익은 1평당 임대료 증가분으로 볼 수 있음</p> <p><편익 대상 인원수></p> <p>–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시설당 평균 정원인 14명으로 산정</p>

(정성)영향집단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및 일반 국민
활동제목	1인당 연면적 기준 확대 시설에서의 보호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
편익항목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조속한 피해 회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인적 자원 확충에 기여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가정폭력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며, 보호시설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을 통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으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p>

일상복귀를 도모할 수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사회적 인적 자원 확충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제고함